시설원예·과수분야 ICT 융복합확산 컨설팅 운영지침

Ⅰ. 사업개요

1. 목 적

○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재배품목과 시설환경에 적합한 ICT 융복합 시설 도입, 점검, 보급 장비들의 효율적 운영 및 확인점검으로 ICT 융복합확산 사업 지원

2. 근거법령

○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(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)

3. 사업추진체계

추진주체	역 할
농림축산식품부	○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침 수립 및 사업비 배정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(전담기관)	○ 컨설팅 세부계획 수립 ○ 컨설턴트 풀 관리 및 만족도 조사 ○ 확산사업 및 컨설팅 추진 현황 이행점검 ○ 컨설팅기관 선정, 사업관리 및 홍보 ○ 컨설팅 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
컨설팅기관	○ 사전점검, 시설점검, 확인점검 컨설팅 시행 ○ 컨설턴트 교육 ○ 컨설팅 결과보고서 점검 및 시스템 입력·관리 ○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
지자체	○ 예비사업자 모집 및 선정 ○ 보조금 교부 관리 ○ 확산사업 검수 및 정산
농업경영체	○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○ ICT장비 계약구매 및 활용

Ⅱ.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○ 시설원예·과수분야 ICT융복합확산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기관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① 공고일 기준, 공모 분야에 시설원예 또는 과수 분야 ICT전문컨설턴트가 2인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관

* ICT확산사업 참여기업 및 시설업체는 참여 불가

② 컨소시엄 구성은 ①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관에 한해 3개 기관 이내에서 가능

* 전문컨설턴트의 자격기준은 <붙임 2> 참조

* 컨설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원예·과수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참여하는 시설업체 임직원 및 관계자(시설업체 대표의 4촌 이내 친족)는 ICT 컨설턴트로 참여 불가

3. 지원대상

○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설원예·과수분야 참여 농업경영체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시설원예, 과수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을 위해 컨설팅 및 예비사업자 신청을 한 농업경영체(농가)를 대상으로 사전점검 컨설팅 비용

○ 시설원예, 과수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을 위해 컨설팅 및 예비사업자 신청 후 선정절차를 통해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농업경영체(농가)를 대상으로 시설점검 및 확인점검 컨설팅 비용

○ 컨설팅 사업관리를 위한 이행점검, 성과분석,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보고회 등 기타 활동에 필요한 경비

5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(지원조건)

○ 국고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

○ 지원비율 : 국고보조 100%

- (시설원예) 국고보조 80%, 자부담 20%

○ 전담기관 :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(농정원)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 컨설팅 단가

- 장비도입 3단계 컨설팅 : 500천원(1회 2시간/1인, 농가 1호 기준)

* 시설도입 3단계 컨설팅은 사전점검(사업변경 포함), 시설점검, 확인점검 컨설팅으로 구성

- 장비활용 생산성향상 컨설팅 : 500천원(1회 2시간/1인, 농가 1호 기준)

○ 컨설팅 횟수

- 시설원예·과수(3회) : 사전점검(1회), 시설점검(1회), 확인점검(1회)

* 분야별 시설원예·과수 3회를 기준으로 추진하되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성과점검 등 필요에 한해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컨설팅 가능하나 사전 전담기관과 협의 후 시행

○ 일반관리비는 컨설팅에 투입된 비용의 10% 이내로 지원 가능

Ⅲ. 사업추진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

1.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단계

농림축산식품부

○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(시설원예, 과수)의 추진 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위한 컨설팅 기본계획 및 지침 마련 후 전담기관에 통보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○ 컨설팅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컨설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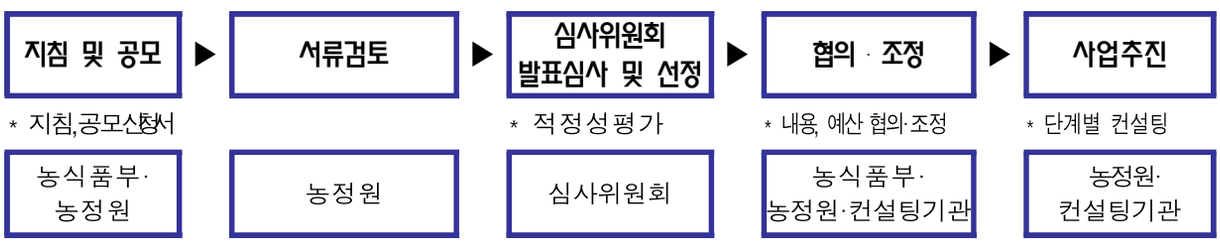
2. 컨설팅 기관의 선정을 위한 단계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○ 시설원예·과수분야 ICT융복합확산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공모

* 컨설팅 기관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턴트 풀, 사업조건 및 서류 등을 포함하여 공모

○ 농식품 ICT 융복합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기관 선정위원회을 구성하여, 공모에 참여한 컨설팅 기관들에 대한 평가 및 선정



* 추가 사업신청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기관과 협의·조정 단계를 거쳐 사업량 및 예산 재조정 추진

○ 컨설팅 권역배정은 전국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컨설팅기관 선정결과에 따라 1순위 2순위 간 동일 수준의 사업량을 배정하되 1순위에게 권역에 대한 우선선택권을 부여함

○ 컨설팅운영기관에 컨설턴트 풀을 제공

○ 선정된 컨설팅 기관은 해당 권역 기반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사업목적, 컨설팅 추진방향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준비

컨설팅기관

○ 컨설팅 기관은 경영, 정보, 시설점검·운영 능력 등 사전점검, 시설점검 및 확인점검 컨설팅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컨설턴트를 2인 이상 구성하여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설컨설팅(공모) 참가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

* ICT융복합확산사업에 참여하는 시설업체 소속 임직원 및 관계자(시설업체 대표의 4촌 이내 친족)는 ICT컨설턴트로 참여하여 수행할 수 없음

○ 선정된 컨설팅 기관은 '20년 ICT융복합확산 컨설팅사업 운영지침'에 따라 '20년 ICT융복합확산 컨설팅사업 세부사업계획서'를 작성하여 농정원에 제출

○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2020년 ICT융복합확산 컨설팅 사업 운영

○ 컨설팅사업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선정된 컨설팅 기관은 단계별 컨설팅 운영 등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전담기관(농정원)에 제출

○ ICT융복합확산 컨설팅 운영지원시스템의 활용 및 농식품부, 전담기관(농정원)에서 실시하는 확산사업 홍보를 적극 지원

○ 선정된 컨설팅 기관은 권역별 활동 가능 지역 및 분야 등을 검토하여 컨설턴트 배정

○ 컨설팅 기관은 다음의 항목에 따른 보고를 진행해야 함

구분	내용	제출시기	방법	산출물
착수보고	◦ 사업 수행계획 보고	사업 착수 시	◦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	수행계획서
중간보고	◦ 사업 중간 시점 내용 점검	사업 중간시점		수행보고서
완료보고	◦ 사업 완료에 따른 결과보고서(농정원측 양식 별도 제공)를 최종산출물과 함께 제출	사업 완료시점		완료보고서 (온오프라인)
수시보고	◦ 주간보고(컨설팅 추진 및 예산 집행 사항) ◦ 컨설팅 추진 중 이슈사항 보고	수시 매주	◦ 한글 또는 엑셀	사업추진 현황보고서, 시스템입력
이슈관리 모니터링	◦ 본 사업자 확정 후 배정된 컨설턴트 등을 활용하여 매월 업체 탐색, 견적서 접수, 장비 사업자 선정·계약 추진 사항 보고	매월	◦ 한글 또는 엑셀	온라인

3. 단계별 컨설팅 단계

《사전점검 컨설팅》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○ 컨설팅 기관의 농업경영체 현장 점검, 사전점검 컨설팅보고서, 사업 집행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컨설팅 기관에 통보

○ 컨설팅 기관이 단계별 컨설팅 보고서를 등록·보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운영지원시스템(http://www.smartfarmkorea.net) 구축·운영

○ 지자체에서 제출한 예비신청농가 접수 및 사업연도, 농가 기본사항 등 확인 후 컨설팅기관으로 신청 명단 송부

○ 컨설팅기관에서 제출한 사전점검 컨설팅 결과보고서 품질점검 후 지자체에 송부

컨설팅기관

○ ICT융복합확산 컨설팅사업 신청 및 예비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컨설턴트의 현장 방문을 통한 농업경영체의 시설 현황을 종합 점검

* 농장관리 컨설턴트가 있을 경우 면담을 통해 의견을 반영 권장

○ 컨설팅 신청자의 ICT 융복합 사업 추진의지, 사업지속 가능성 및 농장현황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평가 시 활용될 자격요건,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

○ 농업경영체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의 안내 및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지원

○ 농식품부(농정원)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·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, 제어정보, 생육정보,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 동의 확인

○ 농림축산식품부, 지방자치단체 및 전담기관이 컨설팅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운영지원시스템을 통해 사전점검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등록

* (컨설팅 운영지원시스템 구축 완료 전에는 전자문서로 제출)

○ 컨설팅 대상 명단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컨설팅 추진 및 보고서 시스템 입력

○ (시설원예분야) 컨설팅 대상 농가 입금 확인 후 해당 농가 현장 방문 및 컨설팅 추진

* 지자체 담당자가 농가별 자부담 납부 확인 후 컨설팅 신청(공문)

* 「2020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(시설보급, 컨설팅)」 컨설팅비 국비 80% 지원,

자부담 20% 부담

○ 컨설팅 물량 배정 시 단일 컨설턴트에게 “60회/년”를 초과할 수 없음

* 컨설팅 신청 물량 급증 및 특정시기 집중 등에 따라 농정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

《시설점검 컨설팅》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○ 현장에 ICT 융복합 시설의 설치현황 확인사항, 시설점검 컨설팅 결과보고서, 사업 집행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컨설팅 기관에 통보

○ 컨설팅기관에서 제출한 시설점검 컨설팅 결과보고서 품질점검 후 지자체에 송부

* 본사업자 미선정자의 사업 진행(사전점검 컨설팅 미실시한 농가의 본 사업 선정 포함), 부당 계약 사항(입찰 미실시), 미등록업체의 계약(장비 포함, ICT기능이 없는 장비 설치 포함), 시설점검 컨설팅 미실시 상태에서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농가는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

* ’21년도 사업자에 대한 시설점검 컨설팅부터는 필수로 진행

컨설팅기관

○ 농업경영체(농가)의 요구사항이 계약체결 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

○ ICT 융복합 시설점검 진행상황을 확인하고, 설치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 확인

○ 농업경영체(농가)가 설치된 ICT 융복합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

○ 시설점검 컨설팅 단계에서 지침 준수여부 모니터링 및 보고

* 본사업자 미선정자의 사업 진행(사전점검 컨설팅 미실시한 농가의 본 사업 선정 포함), 부당 계약 사항(입찰 미실시), 미등록업체의 계약(장비 포함, ICT기능이 없는 장비 설치 포함), 시설점검 컨설팅 미실시 상태에서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농가는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

○ 농업경영체가 계약한 시설장비 업체의 제품이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, 농림축산식품부(전담기관)의 사업지침 및 “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”에 부합하는지 확인

○ 컨설팅 신청자 대상 사업계획서 변경, 사업선정 여부, 사업자선정 후 6개월 이내 계약 진행 여부, 공개입찰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보고

○ 농림축산식품부, 지방자치단체 및 전담기관이 컨설팅결과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운영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설점검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등록

○ 컨설팅 대상 명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컨설팅 추진 및 보고서 시스템 입력

○ (시설원예분야) 컨설팅 대상 농가 입금 확인 후 해당 농가 현장 방문 및 컨설팅 추진

* 지자체 담당자가 농가별 자부담 납부 확인 후 컨설팅 신청(공문)

* 「2020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(시설보급, 컨설팅)」 컨설팅비 국비 80% 지원, 자부담 20% 부담

《확인점검 컨설팅》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○ 현장에 ICT 융복합 시설 설치완료 확인, 확인점검 컨설팅 결과보고서, 사업비 집행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컨설팅 기관에 통보

○ 컨설팅 기관이 시설원예, 과수 ICT 융복합 적용농가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, 노동력 절감 등에 대한 기대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

*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전년도 기준 준용

○ 컨설팅기관에서 제출한 시설점검 컨설팅 결과보고서 품질점검 후 지자체에 송부

컨설팅기관

○ 설치점검 컨설팅 이후 1작기 또는 1년 경과 사업자 대상 컨설팅 추진

○ 현장에서 설치된 ICT 융복합 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작동되는지, 문제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의 비치 및 교육여부, 지원체계 등에 대한 점검

○ 분야별 ICT 융복합 시설의 전후 대비 생산성 및 품질향상, 노동력 절감 등에 대한 기대효과 산출

○ 농림축산식품부, 지방자치단체 및 전담기관이 컨설팅결과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운영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설점검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등록

○ 컨설팅 대상 농가 입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컨설팅 추진 및 보고서 시스템 입력

○ 컨설팅 대상 명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컨설팅 추진 및 보고서 시스템 입력

○ (시설원예분야) 컨설팅 대상 농가 입금 확인 후 해당 농가 현장 방문 및 컨설팅 추진

* 지자체 담당자가 농가별 자부담 납부 확인 후 컨설팅 신청(공문)

* 「2020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(시설보급, 컨설팅)」 컨설팅비 국비 80% 지원, 자부담 20% 부담

4. 자금집행단계

농림축산식품부

○ 전담기관의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컨설팅 세부추진계획 및 세부자금계획을 조정·승인하고 자금을 교부

○ 전담기관의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결과보고서에 따라 정산 및 교부 확정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○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컨설팅 세부추진계획 및 세부자금집행계획을 수립 후,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신청

○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컨설팅기관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국고보조금 개산급 교부신청서를 검토·승인 및 자금 집행

- 구비서류 : 세부사업계획서, 개산급 교부신청서, 계좌이체의뢰서 등

○ 컨설팅 기관의 사업수행 준비 등에 필요한 경비에 관해서는 컨설팅기관의 요청에 따라 단계별 컨설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산급 지급

○ 컨설팅 기관 요청에 따라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3단계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잔액교부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, 사업완료보고서(정산결과 포함)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

○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과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,「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」등의 국고금 집행 기준에 따라야 함

* (붙임 3, 4) '20년 ICT융복합확산 컨설팅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 및 감액 기준

컨설팅기관

○ 전담기관이 승인한 ICT융복합확산 사업 세부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

○ 컨설팅 기관의 사업수행 준비 등에 필요한 경비에 관해서는 전담기관에 단계별 컨설팅 소요경비의 80%이내에서 개산급을 요청할 수 있음

* 컨설팅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시 보조금 교부신청 등

◇ **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계정(계좌)를 설정**하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」에 의거하여 관리

- 컨설팅 세부계획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, 세부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 후 집행
- 모든 사업비 지출은 사업비 계정과 연결된 계좌의 이체, **신용카드(법인용 클린카드)** 또는 **직불카드**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
  * 국고 통장과 연계되어 발급된 신용카드 외 개인카드 사용불가

◇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공문(내부결재), 지급결의서, 사용명세서, 견적서, 세금계산서, 영수증 및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하며,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
  * 단, 일반관리비의 경우는 계좌이체 결과를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

○ 컨설팅 기관은 ICT융복합확산 컨설팅사업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,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정산 및 잔액교부 요청

5. 이행점검단계

《협약의 무효·해약·변경》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○ (협약해약) 전담기관은 아래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컨설팅 업체와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
-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사업완료 및 컨설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컨설팅기관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분야별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침 및 운영지침을 위반하는 경우
-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(자금회수)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, 전액 또는 잔액을 컨설팅기관으로부터 회수

* 중도해지 등에 따른 실비 정산 시 컨설팅 비용은 <붙임 3> 컨설팅 사업비 집행 기준으로 정산하고, 사업관리 비용은 투입일수(M/D)에 근거하여 산출

컨설팅기관

○ (협약의 변경) 컨설팅기관은 아래의 사유에 의한 계약 변경은 농정원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

- 컨실팅 기간,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등 변경
- 투입인력의 구성 변경
- 그 외 컨설팅 관련 주요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
- 그 외 사유에 의하여 계약변경 승인 없이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회수 및 감액 처리

농림축산식품부

○ 전담기관에서 보고한 컨설팅 단계별(사전점검, 시설점검, 확인점검) 점검결과를 확인

* 필요 시 컨설팅 점검반과 합동으로 컨설팅 수행사항 및 수행결과를 점검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○ (수시점검) 농업경영체 대상 시설도입 및 행정지원 결과 수시 유선 등 모니터링 실시

○ (정기점검)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수행상황 및 결과를 점검하고, 농림축산식품부에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
- 일정 : 단계별(사전점검, 시설점검, 확인점검) 컨설팅 추진 이후
- 인원 : 농식품부, 전담기관, 전문가 및 지자체 등
- 내용 : 컨설팅 사업지침 및 컨설팅 수행계획서상의 이행여부

○ (전문가 점검) 당해연도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대상 사업수행 결과 및 농업경영체 대상 만족도 조사를 위한 점검단 운영 및 활용

○ 사업지침 준수 및 부정수급 유의사항 안내 등을 위한 지자체, 농업경영체, ICT장비기업 대상 현장 설명회 및 교육 실시

○ 사업비 부당 사용 또는 목적 외 집행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반환 조치할 수 있음

컨설팅기관

○ 전담기관의 합동컨설팅 및 컨설팅 점검 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, 합동컨설팅 및 합동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

○ ICT 융복합 확산사업 대상자로 컨설팅을 받은 농업경영체(농가)가 컨설팅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·문의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여야 함

○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용목적별로 기록·유지하고, 단계별 컨설팅 결과를 점검기관(농림축산식품부, 농정원, 지자체)에서 점검,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

○ 컨설팅의 불성실한 이행, ICT 융복합 관련기업과의 부당 관련, 자금 집행 관련규정 미이행 시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

○ 컨설팅기관 해당 권역에서 활동한 내·외부 컨설턴트에 대한 자체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

《제제 및 처벌내용》

컨설팅기관

○ 결격사유가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불이행 시 협약 해약

*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, 협약 해약 및 차년도 해당사업 참여 제한

○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협약 해약 후 지원자금 회수하며, 해당 사업에서 영구 참여 제한(One Strike-Out)

- 컨설팅 관련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 확정 시
- 컨설팅기관 소속 컨설턴트에 의한 특정업체 장비 몰아주기, 컨설팅비 외 별도 비용 요구

○ 다음과 같이 부실·허위로 컨설팅 공모사업을 관리한 경우 협약을 해약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하며, 향후 2년간 해당 사업 참여불가

- 중간보고서, 완료보고서 등 컨설팅 결과물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
- 농업경영체의 개인정보, 영업정보, 기밀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출한 경우

컨설턴트

○ 결격사유가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불이행 시 컨설턴트 풀에서 제외

*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, 컨설턴트 풀 등록 즉시 제외 및 차년도 등록 제한

○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, 해당 사업에서 영구 참여 제한(One Strike-Out)

- 컨설턴트 등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
- 컨설팅 관련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 확정 시
- 특정업체 장비 몰아주기, 컨설팅비 외 별도 비용 요구
- 컨설팅기관 및 농업경영체로부터 지속적인 불만사항 발생

○ 다음과 같이 부실·허위로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, 향후 2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

- 컨설팅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
- 농업경영체의 개인정보, 영업정보, 기밀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출한 경우
- 컨설팅 수행 결과보고 시간에 다른 업무(타사업 컨설팅, 강의 등)를 중복하여 수행한 경우

6. 환류단계

농림축산식품부

○ 우수사례로 선정된 농업경영체(농가)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'21년도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침에 반영

* 추가적인 사업물량에 대해 차년도 사업에 추가 신청기회 부여, ICT 융복합 교육농장으로 지정, 홍보사례 활용 등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○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통한 컨설팅 절차상 문제점 발굴·개선

○ 컨설팅 만족도 조사 기반 컨설턴트별 등급화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컨설턴트 선택 기반 마련 및 등급별 컨설팅비 세분화

○ 컨설팅 기관과 함께 ICT 융복합 우수사례를 발굴

컨설팅기관

○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컨설팅 결과 우수농가의 발굴 및 관련 산출물 준비

7. 컨설팅기관 필독 및 준수 지침

○ 컨설팅 기관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법률과 지침을 준수하고, 농업경영체가 해당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충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.

① 시설원예·과수분야 ICT융복합확산사업 지침. 농림축산식품부. 2020
②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. 농림축산식품부. 2020
③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. 기획재정부. 2020
④ 시설원예·과수분야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. 농정원. 2020
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. 기획재정부. 2020
⑥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. 기획재정부. 2020
⑦ 계약 예규. 기획재정부. 2020
⑧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. 행정안전부. 2020
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. 기획재정부. 2020
⑩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. 농정원. 2020

【붙임 1】 청렴서약서

청 렴 서 약 서

본인은「ICT융복합확산 컨설팅사업」의 컨설턴트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.

1. 특정 ICT장비 및 기업에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정당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
2. 농업경영체 컨설팅 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.
3. 컨설팅 외에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

추후 특정업체·장비 몰아주기, 컨설팅비 외 별도 비용 요구, 컨설팅 시 지속적인 불만사항 발생 등이 있을 경우 본 사업의 컨설턴트 영구 자격박탈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도의적·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함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소 속 :

컨설턴트명 : (직인 또는 서명)

【붙임 2】 컨설팅 투입 참여동의서

참 여 동 의 서

본인은 시설원예·과수분야 컨설팅 전문가로서 「시설원예·과수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」 참여 및 농정원에서 구축하는 컨설턴트 풀 참여에 동의하고, ICT융복합 확산 컨설턴트임을 인증합니다.

20 년 월 일

컨설턴트 (인)

【붙임 3】 컨설팅 사업비 집행 기준

구분	산출내역 및 지급단가
컨설팅 횟수 및 비용	○ 컨설팅 1회 비용은 1인 2시간 기준 500,000원 지급하고 초과할 수 없음 * 컨설턴트 인건비, 여비, 숙박비, 다과비, 인쇄비, 차량임차비 등을 통합하여 일괄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나, 제주지역 미거주자가 제주지역을 컨설팅할 경우에는 제주지역 일반석(economy) 항공료의 편도비용을 실비로 추가 지급 가능 * 컨설팅비는 실제 컨설팅을 위해 지출한 총비용으로 책정 * 일반관리비는 컨설팅비용의 10% 이내로 책정(천원 이하 절사) * 컨설팅 비용의 20%는 농가 자부담분임 ○ 컨설팅 물량 배정 시 단일 컨설턴트에게 "60회/년"를 초과할 수 없음 * 단, 60회를 초과하지 않은 컨설턴트에게 물량 우선 배정 후 포기 시 농정원과 협의하여 추가 진행 가능 ○ 컨설팅 비용은 분야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 - 시설원예·과수의 경우 사전점검·시설점검·확인점검컨설팅(각 1회) * 시설원예・과수분야를 기준으로 추진하되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성과점검 등 필요에 한해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컨설팅 가능하며 사전 전담기관과 협의 후 시행 ○ 복수 필지의 경우 필지 간 300m 이상 이격된 필지는 개별 컨설팅 진행
컨설턴트 투입시간	○ 각 단계별 투입인력 1인 기준 2시간 이상 * 실제 농업경영체 현장 컨설팅 투입시간 기준이며 농업 경영체 사전연락 및 차량이동 거리 등의 시간은 제외 *** 컨설턴트별 컨설팅 추진 횟수는 4회/일을 초과하여 진행할 수 없음** * 컨설팅 1회 당 컨설턴트 2인 이상 동시 불허
컨설팅 평가	○ 업체별 컨설팅 내용, 투입인력, 투입시간 등에 대해 집행기준 미준수 시, 감액산출기준표에 따라 정산 시 감액 조치 * 전담기관의 시정조치 불이행시 환수 및 참여제한 가능

【붙임 4】 컨설팅 사업비 감액 기준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조치</th></tr>
<tr><td>시간 및
비용</td><td>① 컨설팅 1회 당 실제 농가 현장 컨설팅 투입시간 기준이며 사전연락 및 차량이동 거리 등의 시간은 제외된 컨설팅 관련 활동 시간 기준으로 산정
② 컨설팅 1회 비용은 1인 2시간 기준 500,000원 지급하고 초과할 수 없음
* 컨설턴트 인건비, 컨설턴트여비, 숙박비, 다과비, 인쇄비, 차량임차비 등을 통합하여 일괄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나, 제주지역 미거주자가 제주지역을 컨설팅할 경우에는 제주지역 일반석(economy) 항공료의 편도비용을 실비로 추가 지급 가능
- 방문증빙 : 방문확인서 및 위치 확인이 가능한 사진, 구매 영수증, 도로통행권 중 1
- 시간증빙 : 도로통행권, 사진 메타데이터
* 방문확인서 상에 방문시간, 일자, 농장주 확인 사항 정확히 기재
*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사진은 위치정보, 시간 등 메타정보를 포함하여 저장 및 컨설팅 관리시스템 등록
※ 수행시간 검토결과에 따른 재정산 기준
<table>
<tr><th colspan="4">농가 방문 확인 가능 시</th><th rowspan="2">방문확인불가</th></tr>
<tr><th>2시간 이상 증빙 확인</th><th colspan="2">1시간 이상 2시간 미만</th><th>1시간 이내</th></tr>
<tr><th></th><th>시간증빙 ○</th><th>시간증빙 ×</th><th></th><th></th></tr>
<tr><td>50만원</td><td>25만원</td><td>10만원</td><td>10만원</td><td>0원</td></tr>
</table>
③ 비용 기준에는 컨설팅 활동비(컨설팅+인쇄비 등), 여비, 일비 등이 반영된 일괄 비용
※ 제주도 지역의 경우에는 항공료(일반석 기준)를 실비로 ○○원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</td></tr>
<tr><td>횟수</td><td>① 시설원예 · 과수 분야는 사전점검 · 시설점검 · 확인점검 단계별 컨설팅 각 1회 이내
② 일 1회 이상 수행 건에 대해서는 이동거리, 시간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수행 시간 검증 및 증빙 자료를 토대로 정산</td></tr>
<tr><td>투입인력 및 인원</td><td>① 기본적으로 1농가 당 1인 기준으로 컨설팅을 수행
② 2인 이상의 경우, 1단계(사전) 컨설팅 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 및 활동 내용을 고려하여 비용 정산, 그 외 단계의 동반 컨설팅의 경우, 사유 및 활동 증빙 자료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
③ 수행기관에서 제시한 컨설턴트풀에 포함되지 않은 컨설턴트 투입 시, 비용 지급 불가</td></tr>
<tr><td>컨설팅 방문 추진 여부에 따른 비용집행</td><td>① 농가 방문 전 포기 : 0% 비용 지급
② 농가 방문 후 포기 : 100% 비용 지급
* 컨설팅결과보고서 100% 미만의 경우, 왕복 교통비(대중교통 기준) 추가 지급 가능하나, 왕복교통비 산정근거를 제출해야 함
* 농가의 컨설팅 포기각서 제출
③ 당초 추진한 사업대상자 컨설팅 재실시
* 개별 사업 신청 시(사업지 변경, 추가 등) 컨설팅비용의 100% 지급</td></tr>
</table>

구분	조치
점검결과 수정·보완 조치 미이행시	① 보완 조치 후,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, 15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15일이 초과될 경우 전액 감액 처리

【붙임 5-1】 시설원예·과수분야 ICT융복합 전문컨설턴트 자격기준

○ 전문인력 자격기준 : 법령으로 공인된 아래의 자격소지자 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

*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기사, 기능장,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포함

① (농업, 축산 등 농업관련 분야) 농학박사, 이학박사, 공학박사 중 1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

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아래의 국가기술자격 중 1개 이상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- 농화학기술사, 시설원예기술사, 전기기술사(건축전기설비, 전기응용), 전자응용기술사

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아래의 국가기술자격 중 1개 이상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- 농업기계기사, (구)농화학기사, 시설원예기사, 식물보호기사, 유기농업기사, 종자기사, 전기기사

④ 그 외 다음사항 해당자

가. 농축산, ICT분야 학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

나. 농축산, ICT분야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

다. 학사학위 취득 후 농축산, ICT분야 컨설팅업체에서 5년 이상 컨설턴트로 근무한 자

※ 컨설턴트로 활동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에 한함(경력증명서, 계약서 등)

라. 석사학위 취득 후 농축산, ICT분야 컨설팅업체에서 3년 이상 컨설턴트로 근무한 자

※ 컨설턴트로 활동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에 한함(경력증명서, 계약서 등)

마. 농업마이스터 지정인, 신지식 농업인으로 지정된 지 2년 이상인 자 또는 한국농수산대학(구 한국농업대학) 졸업, 품목특화대학 또는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 후 컨설팅경력 3년 이상인 자

※ ICT융복합 관련 컨설팅 경력이 없는 경우 ICT융복합 관련 컨설팅 기관에서의 컨설팅 보조 업무로 근무한 경험도 컨설팅 경력의 50%로 인정.(단, ICT융복합 관련 컨설팅 경력이 없는 신청자의 경우 근무경력 평가 점수의 만점은 80%로 한정)

바. 농업 관련 및 전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ICT 관련 전문교육을 120시간 이상 수료한 자

○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컨설팅사업 등록업체 임직원 및 관계자는 제외

※ 관계자의 범위 : 등록업체 대표와 4촌 이내의 친족

【붙임 5-2】 시설원예・과수분야 ICT융복합 전문컨설턴트 취소 요건

취소 요건
1. 등록 신청서 상 기재된 정보 또는 증빙이 미비하거나 부실한 경우 2. 이력사항(학위, 자격증, 경력 증명 등) 중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 경우 3. 농식품부 및 각급 기관에서 사업 수행 관련 참여 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4. 국가 관련 업무 추진 중 국비 환수가 확정되고 진행 중인 경우 5. 컨설턴트 청렴서약서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. 컨설팅 수행 후 농가 대상 1차(컨설팅기관) 및 2차(농정원) 만족도 조사 결과 내·외부 평가위원의 심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